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9년 2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1급지 공영노외주차장 월정기 이용자의 활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주차장의 공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계약(50대 이상)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60%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영주차장의 요금(별표1)
 -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단체계약(50대이상) 체결시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60%범위 안에서 조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6264, FAX: 3396-8873, 메일: rokaff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비고란의 제4호에 “50%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”를 “50%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, 1급지 공영노외주차장 단체계약(50대 이상) 체결시에는 60%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【별표1】 - 비 고- 1 ~ 3. (생략) 4.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%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<u>있다</u>.	【별표1】 - 비 고- 1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있으며, 1급지 <u>공영노외주차장 단체계약(50대 이상)</u> <u>체결시에는 60%범위 안에서 조정할</u> <u>수 있다</u>.